

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정진욱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79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5.

발 의 자 : 정진욱 · 권향엽 · 박균택
양부남 · 이개호 · 조인철
임문영 · 안도걸 · 정일영
장종태 · 오세희 · 박지원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, 기술개발 및 설계·제조·공급·연구·판매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.

그런데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발생한 오염토양은 원칙적으로 「토양환경보전법」에 따라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하는데, 정화 작업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전체적으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반도체클러스터 내 부지의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15조의3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2 신설).

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
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「토양환경보전법」에 관한 특례) 사업시행자가 반도체클러스터 내 부지의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15조의3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(같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기 위하여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)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5조의2(「토양환경보전법」에 관한 특례) 사업시행자가 반도 체클러스터 내 부지의 오염토 양을 정화할 때에는 「토양환 경보전법」 제15조의3제3항 본 문에도 불구하고 토양정화업자 가 보유한 시설(같은 법 제23 조의7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기 위하여 등 록한 시설을 말한다)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 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 다.